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9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지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송경택,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허 · 훈,  
황철규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통해 그 공헌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 함께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 제7호).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제7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개정함에 따라 세입금 감소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제7호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자료로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을 첨부함(붙임1)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 1] 2025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 112,281명

(2024. 5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분	총계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재일학도 의용군	고엽제 후유의증자	상이군경 (전상공상)	공상 공무원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 수훈자
총계	112,281	2,223	38,885	343	572	569	41	7,128	36,047	681	8,420	17,372
본인	68,412	1	38,885	156	474	387	1	7,128	18,316	327	0	2,737
유족	43,869	2,222	0	187	98	182	40	0	17,731	354	8,420	14,635